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숙자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765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4월 03일

발 의 자: 이숙자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곽향기,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지향,
김춘곤, 김형재, 남궁역,
남창진, 박상혁, 박춘선,
신복자, 왕정순, 이경숙,
이병운, 이상욱, 이원형,
장태용, 최민규, 허·훈,
홍국표, 황유정 의원(23
명)

1. 제안이유

- 최근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 등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산업계 전반에서 노동력 부족이 가시화되고 있음.
- 우리보다 앞서 인구감소에 직면했던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들은 인구 증가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고자 장학금 등의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여 산업전반의 쇠퇴를 방지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와 인식을 확산해 왔음.
- 이에 서울시가 실시하는 공적개발원조의 활용을 위한 사업에 개발도상국 유학생과 연수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추가하여 미래의 노동력 부족문제에 대응하고, 서울과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적개발원조의 활용을 위한 사업 중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에 '장학금 지원'을 추가(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개도국”을 “개발도상국”으로 하고, “지원”을 “지원(장학금 지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공적개발원조의 활용) ① (생략)</p> <p>② 시장은 제1항의 공적개발원조의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젝트 원조 2. <u>개도국</u>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3. 기술원조 4. 그 밖에 공적개발원조로 인정되는 사업 	<p>제20조(공적개발원조의 활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개발도상국</u>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u>장학금 지원을 포함한다.</u>)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공적개발원조의 활용)은 개발동상국 유학생 및 연수생에게 장학금을 포함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비용이 발생하지만, 서울시 관련부서(국제교류과) 문의결과 현재 기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참고] 2024년 서울시 기금운영계획

(단위: 천원)

회계구분	2024년 예산내역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서울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	○ 유학생 장학 프로그램 운영 = 400,000
	· 대학원 등록금 10,000,000원
	· 대학원 학비 136,000,000원
	· 입국 항공료 14,000,000원
	· 생활비 240,000,000원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추계분석관 이홍래

☎ 02-2180-7952

e-mail : hong1004@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